훈련장려금 안내

■ 지급대상

- 단위기간 출석률이 80% 이상인 훈련생(실업자)
- 일용근로자 :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

(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)

- 영세자영업자 :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(임의가입)한 경우

■ 훈련장려금

15,800원(1일)×(단위기간 출석일수)

(단, 20일 기준 최대 월 316,000원)

■ 훈련장려금 제외 대상

- 근로자, 실업급여 수급자
- 고유번호(사업자등록번호)를 갖고 있는 자영업자 및 단체의 대표
- 일용근로자
 - ① 주 15시간 이상 근로
 - ② 단위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 동안의 일용근로내역 일수가 1월간 10일 이상인 사람이 아닐 것. (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1항)
-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훈련도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 하지 아니함.

■ 단위기간

구 분	기간	훈련일수
1월차	2024.11.11. ~ 2024.12.10.	22일
2월차	2024.12.11. ~ 2025.01.10.	21일
3월차	2025.01.11. ~ 2025.02.10.	18일
4월차	2025.02.11. ~ 2025.03.10.	19일
5월차	2025.03.11. ~ 2025.04.10.	23일
6월차	2025.04.11. ~ 2025.05.02.	16일

참고.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금액

https://blog.naver.com/kansan7113/223104341132 https://m.work24.go.kr/cm/c/f/1100/selecSystInfo.do?systId=SI00000423&systClId=SC00000197



교통비 1일 2,500원 식비 1일 3,300원

한달에 최대로 인정되는 훈련장려 금은 20일이기에 한달에 최대

5,800원×20일=116,000원

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K-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장려금
 - K-디지털 트레인 지원금은 **일반훈련수당**과 특별훈련수당으로 구성됨.
 - **훈련장려금**은 **1개월에 최대 116,000원**(5800원×20일=116,000원) 공통적으로 지급됨.
 - 특별훈련수당은 수업에 참여시 하루 1만원씩 지급되어 **1개월에 최대 200,000원** (1만원×20일=200,000원) 지급됨.

일반훈련수당 116,000원 + 특별훈련수당 200,000원 = 월 최대 316,000원

○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장려금

1일 1만원 × 20일 = 월 최대 200,000원

○ 산대특 훈련장려금

1일 5,800원 × 20일 = 월 최대 116,000원